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흠제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3695호

다. 제출일자 : 2026. 5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6. 5. 27.

2. 제안사유

-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,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,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질서에 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.

- 이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(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6. 5. 30. ~ 6. 3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1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 보행자전거과-8030호(2026.6.2.)

-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, 충전 목적 외로 장기간 주차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현행 조례는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질서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소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목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전기자전거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에 따르면 ‘시장·구청장 등은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자전거 충전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’ 위임²⁾하고 있음
-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19년에 ‘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’을 현행 조례에 규정하였음³⁾

2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2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·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·보수하여야 하며,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전소를 주차 용도가 아닌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
-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, 자전거 보관소 등의 자전거 주차시설은 4,846개소로⁴⁾ 대부분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전무한 실정임⁵⁾
- 현재 서울시가 설치·운영 중인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직접적인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비하여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이와 함께 동 개정조례안에서 충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 시 별도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
4) 자전거주차시설 현황 (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, 2025.8.기준)

구 분	계	자전거 주차장	자전거보관소	이외 주차시설
지점(개소)	4,846	30	6	4,810

5)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현황 (서울시 내부자료)

- 공공 충전소 : 현재 설치·운영 중인 공공 충전소 없음 /
- 민간 충전소 : 일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민간 전기 충전시설은 설치·운영되고 있지 않음